

---

#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21.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21. 10. 26.(화) 10:00 ~ 11:25
- ◆ 장 소 : 영상회의
- ◆ 참 석
  - 심의위원 : 000, 000, 000, 000, 000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 (2021-75) :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재산상황 검사사항
  - (2021-76)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 (2021-77)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진정서 사본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21-75) : 인용 - 공개
  - (2021-76) : 부분인용 - 부분공개
  - (2021-77) : 기각 - 비공개

【 개 회 】

〈000 위원장〉

○ 안녕하세요?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000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 000 위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이의신청 3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각 안건의 간사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안건마다 질의응답, 토의를 거쳐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안번호 2021-75 이의신청 】

안건명 :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재산상황 검사사항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75호 박물관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 박물관과 000입니다.

〈000 위원〉

○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 3건인 것이지요? 첫 번째가 재단법인의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산현황 그리고 정관 변경 허가신청이 3건을 정보공개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그러면 신청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공개보다 부존재 통보를 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네. 법령 규칙상 저희가 받을 의무는 없어서 사실상 정보가 부존재하고 부존재 결정으로 다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두 번째 재산현황 같은 경우, 신청인은 해당 재단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고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는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공개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박물관과는 조항을 통해서 그리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신청인은 특정한 어떠한 정보 같은 것은 비공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 부분공개가 가능하냐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민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재산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했을 때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안내서에서도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단체 자금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재산 자체가 공개랑 부분공개로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비공개 판단을 하였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세 번째는 정관 변경 허가신청 관련된 것인데요. 정관 자체를 공개해달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건가요?

〈000 주무관〉

- 정관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변경된 게 1건이 있어서 그것은 공개하였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신청인이 일부분만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또 이번에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왜 또 신청을 한 것이지요?

〈000 주무관〉

- 재신청한 것은 아니고 정관 변경 사항처럼 부분공개를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1번, 2번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3번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저희가 다루지 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이지요? 3번에 대한 공개 여부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1번 부존재, 2번은 부분공개 할 별다른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통해서 비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지금 3번이 공개내용이고 비공개가 1번, 2번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주심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서 한 번 더 확인 차 여쭙보고 싶은 것이 비공개자료는 정관이잖아요?

〈000 주무관〉

- 네.

〈000 위원〉

- 그 정관 자체는 공개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내용 중에서 이것을 다 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지막 부분에 별지1 재산목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 다시 여쭙 봐요.

〈000 주무관〉

- 공개됐을 때 정관 관련된 사항 자체가 아예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정관 변경한 신청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만 정관 자체에 대한 공개를 원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정관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지금 정관을 비공개대상인 자료로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보내주

신 거예요?

<000 주무관>

○ 네. 별지에.

<000 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게 유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번, 2번과 관련해서 더 자료가 있는 건가요? 1번은 부존재라고 하시고, 2번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관 자료 밖에 없다고 보면 될까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2번과 관련해서 보내주신 정관의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를 심의하면 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네. 별지에 있는 재산상황을 공개하실지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만약에 저희가 별지1을 공개한다고 결정을 하면 정관이 전체가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별지1의 내용만 공개가 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네. 청구인께서 따로 정관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지는 않으셔서 공개되더라



도 별지에 해당하는 것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000 위원〉

-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궁금했던 것이 청구 내용은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사항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사사항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청구인이 혹시 기대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재단이 제출한 자료 그 자체잖아요? 서울시가 이것을 받고 뭔가 검사하고 이런 자료는 따로 없는 건가요?

〈000 주무관〉

- 네, 검사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000 위원〉

- 이게 비영리재단법인이어서 국세청에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공시로. 그래서 재산상황 같은 것 그리고 이어나 감사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 재단법인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공개 사유로 재단의 자금 및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세청을 통해서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단체의 자금 및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라서 비공개 사유라고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실까요?

〈000 주무관〉

- 이게 저희 부서가 직접 만든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재단법인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비공개를 원하고 있었고 만약 국세청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공개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서울시가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자료도 어떻게 보면 공개대상이고 그 2개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자의 의견도 서울시가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무조건 기속되는 것도 아니기는 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국세청에서 이미 대외적으로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특히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투명한 사항을 모두가 다 알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 공시를 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단의 입장만 들어서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000 위원〉

-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단법인 등록을 하거나 사단법인 등록을 할 때 주무관청을 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최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해당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당 세무서에 보고를 해야 국세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 파악을 하고 사업실적 보고가 한 몇 년 동안 빠지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해당 재단이 정기적으로 재단 관련 사항을 보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000 주무관〉

- 저희 부서에서는 설립 이후 따로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000 위원〉

- 제가 궁금해서 해당 재단을 인터넷에 쳐봤는데요. 이게 문체부 소관 비영리재단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소관인가요?

〈000 주무관〉

- 서울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정관을 보니까 제35조에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실적서, 수지결산 이런 것을 주무관청에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때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재단법인 관련해서 어떤 재산 상황이라든지 법인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하고 그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다른 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규칙상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에서는 2005년 이후로 사업실적 및 계획을 보고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어서 그 이후로 받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정보가 부존재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질의 마무리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잠시 대기하셨다가 의결 내용 선포시에 다시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저는 요청했던 1번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은 부존재한다고 하니까 공개, 비공개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재산상황이랑 검사사항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재산상황이 다 공개가 되는지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정보공개법 9조1항7호 그 다음에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세청 통해서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까 공개, 비공개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저는 현재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의 관리와 관련해서 주무관청이 법상 파악해야 되는 자료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재산현황 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세무서에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실적 등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소위 주무관청의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세청 쪽에 사업자등록증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미 관련 세무서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마당에 이것을 따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것이 다소 난센

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앞서 부존재 건은 주무관청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일단 첫 번째 청구 사항 같은 경우는 부존재하다고 하니까 부존재 통보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가 부존재하는 것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구분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존재 할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청구는 일단 없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7호의 영업상, 경영상의 비밀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에 관해서 아무런 검사나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부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을 통보하도록 하고 원래 단체에 관해서 감독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1번 부존재, 2번은 공개 의견이신 것이지요?

〈000 위원〉

- 그런데 2번도 작성된 서류가 없다고 해서, 서울시 자체로는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이 주무관님의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부존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서울시에서 따로 받아서 생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검사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위원〉

- 저는 1번 부존재, 2번 공개 의견이고요.

부존재인데 서울시가 확인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정보라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 위원〉

- 이게 2005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이 규칙을 바꾸면서 재산목록하고 재산 등의 제출 의무를 폐기해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 결산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 자체를 규정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05년 이후에는 모인 게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관련된 모든 단체가 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부존재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00 위원〉

-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가 감사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부존재인 것 같고, 재산상황 같은 경우에는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분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서울시가 해당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현황과 관련된 부분이 국세청에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굳이 서울시를 통해서 정보공개로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아까 비공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사업실적, 사업계획 그리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부존재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재단의 재산상황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000 위원〉

- 지금 국세청 홈텍스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가 있는데요. 제가 해당 문화재단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을 때 2005년에 정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정보 공시를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최초에 이렇게 문화재 유품 같은 것을 박물관 전 시용으로 기증한 이후에 사실상 추가 기부도 없고 쓴 것도 없고 활동내역이 없더라고요. 공시 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관의 기부내역이 공개가 같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저는 공익법인 공시 취지에 맞게 국민들의 알 권리가 실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000 위원〉

- 그러면 일단 민원인이 청구한 것처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그 다음에 사무검사 사항은 2005년에 관련 규칙 폐지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고, 부존재가 맞는 것 같고요. 재산상황은 정관에 붙어 있는, 첨부

로 붙어 있는 재산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재산상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부존재로 기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000 위원〉

-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분인용 사항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사무검사 사항은 정보 부존재로 각하 의견이고 재산상황은 정관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물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75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1- 76 이의신청 】

안건명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76호 권익보호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 권익보호담당관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000 위원〉

○ 본 안건은 000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에 따르면 대다수 광역지자체들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000 팀장〉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에 이미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하면서 위원 성별만 부분공개를 하셨잖아요?

〈000 팀장〉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지금 첨부된 비공개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거기도 성만 밝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정도만 밝히면서 사실 동일성이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당사자의 어떤 동일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성별 정도만 밝히는 것에 추가해서 저희한테 보낸 위원 명단 정도도 저는 부분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000 팀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00 이 정도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000 위원〉

○ 네. 여기 보내주신 첨부파일에 보면 ‘고00, 00법률사무소, 법조계’ 그 다음에 ‘김00, 000대표,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당사자의 동일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위원 중에 남녀 성별해서 성비로만 보낸 것에 추가해서 이 정도 정보공개는 지금 위원회의 어떤 구성상에 어떤 유관 인물이 들어와 있는가를 파악하는 정보로는 괜찮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000 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유사 사례나 법원 판례를 봐도 저도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력란에 오히려 밝히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하면서 공개가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것처럼 성폭력·성희롱 심사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의 특수성이나 또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때로 비공개가 가능하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판례 취지처럼 위원 개인의 사생활과 다음에 정보공개라고 하는 알 권리를 협력해서 적정한 타협선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제 생각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익명처리를 한 이 정도 명단은 충분히 공개해도 위원회의 활동이나 또는 위원 개인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000 위원〉

- 2008년에 서울행정법원에 판결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양력이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판결에 보면 사면위원회 위원들이 공개되면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위험이 있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비공개를 정당화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명단과 양력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2008년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던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공개하라고 1심에서 비공개 결정이 났다가 2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이 뒤집어졌던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위원회 위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공적인 심의를 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개 판결의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부분이 심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는 있지만 그 위원들이 책임성과 전문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들에 대한 검증을 외부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000 팀장〉

- 방금 말씀해주신 서면심사위원회 관련된 판례는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위원회에서는 어디에 해당된다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이 나오면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단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재조사 없이 바로 징계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위원회처럼 사건처리와 관련해서 단순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를 직접 심의의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이 위원분들께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 판단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사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위원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위원을 구성할 때 사건처리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지방변호사회라든가 여성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이런 전문기관에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해당 분야에,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위원님들로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인사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건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무마하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관에게 사

건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다른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자문을 하고 그 의견이 기속력이 없는 경우에 비교해서 오히려 이 의견이 굉장히 강력한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더욱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성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특히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사건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비공개 되지는 않잖아요. 회의 내용이라든지, 위원회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떤 보호를 위해서 다 익명처리하거나 비공개를 할 수 있고 이 위원회 위원이 시민들한테는 비공개 되지만 사실 서울시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활을 걸고 본인의 인생에서 이 결정을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비공개된 위원회 명단을 알음알음 알아서 접촉하게 될 경우에 그 심의의 결과를 더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 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결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3개 지자체는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가 공개를 하는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있어서 선도적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000 팀장〉

- 일단 해당 심의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의결하는 대상이 서울시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명단은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알음알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

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는 감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1명하고 권익보호담당관 조사관 1명 이렇게 2명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가 판단되면 심의 결과가 감사위원회에서 재조사 없이 징계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위원회 소속 조사관까지 이 조사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와 절차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라든가 감사위원회도 현재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처리에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서 비공개도 필요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인 9조1항5호의 감사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셨다가 의결 내용 선포 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저는 어쨌든 공공기관의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 명단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특수성과 해당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서 때로 예외적으로는 저는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성희롱 관련된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공개보다는 부분공개가 타당한데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익명

처리를 한 명단 정도는 당사자의 신청 내용대로 전문성 있는 위원이 위촉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공개요구의 취지에도 어느 정도 부응한다고 생각해서 당사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위원 명단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저는 완전 공개를 했을 때는 성희롱·성폭력 심사를 받는 대상자가 위원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공개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붙임 파일처럼 공개를 했을 때 신청인이 과연 이 정도 수준을 원할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변호사라든지 또는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학계 이렇게 세 파트 쪽에서 위원들을 위촉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개한 수준에서 민간단체에서 몇 명, 법조계에서 몇 명, 학계에서 몇 명 이 정도로만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개를 하라고, 부분 공개가 됐든 완전공개가 됐든 간에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 했을 때 각 위원들의 개인적인 동의 여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비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분공개를 한다고 하면 000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 그룹에서 몇 명 이 정도로만 해도 별 다른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00 위원〉

-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소속 위원 위촉을 받고 나중에 국정감사 때 해당 국회 쪽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할 때는 해당 부처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

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실명이 나가는 경우예요. 이번처럼 익명 처리 해서 나가는 것까지 해당 위원한테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이미 해당 부서에서는 성별, 위촉사유, 위촉일은 다 공개한 것이고요. 성명하고 소속 단체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면 확인할 텐데 그 부분을 아예 공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름은 가리고 성만 이미 공개를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000 위원〉

- 이 사안이 성범죄를 심의하는 부분에서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비위를 심의하는 기구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심의대상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외부에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보공개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전체 공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붙임 위원 명단의 표로 만들어진 것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000 위원〉

-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붙임으로 된 명단이 이런 식으로 부분공개를 했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요. 그런데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주요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서 과연 서울시에서 부분공개한 그 내용이 붙임서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 청구내용 공개한 내용 중에서 성별하고 위촉일자, 사유, 성별이 정도만 공개하는 내용으로 적어서 보낸 것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청구를 한 건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부분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붙임으로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해서 여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까지 표로 들어가게 해서 공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표 전체를 공개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만 일부 추려서 성별, 위촉일, 이수여부 이런 것만 문장으로 만들어서 공개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붙임으로 나와 있는 표로 만들어진 위원 명단 정도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주요 경력부분도 사실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교수 어느 민간단체 대표 이래서 어느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희롱, 성폭력 같은 사건은 사안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공개 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전체 공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대신 붙임 명단 정도로 표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받아본 그 정도는 공개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 네, 저는 공개의견입니다.

세 분은 부분공개 의견이고 두 사람이 공개 의견인데 이게 만약에 이미 이렇게 ‘00’ 해서 공개된 상태라면 기각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3가지만 공개 했고 2가지는 아예 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부분공개 의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 재입장)

〈000 위원〉

- 담당관님, 붙임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성명을 ‘김00’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공개된 건가요, 아니면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000 팀장〉

- 저희가 부분공개 할 때 이것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위해 심의회 용도로 드린겁니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분인용 내용은 성명과 소속단체를 실명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리해서 공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00’ 식으로 단체도 ‘00단체’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76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번호 2021-77 이의신청 】

안건명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진정서 사본

〈000 위원〉

- 의안번호 제2021-77호 감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주무관〉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000라고 합니다.

〈000 위원〉

- 본 안건은 000 위원님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000 위원〉

- 진정인이 [REDACTED] 공익신고 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공익신고 한 것 같거든요.

〈000 주무관〉

- 2019년도 5월에 감사원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진정을 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서울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정보공개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니까 진정인이 서울시, 경찰,

감찰 등 고발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형사 고소나 고발 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을까요? 아시나요?

〈000 주무관〉

-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9년도 5월에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REDACTED]  
[REDACTED]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형사고소나 고발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000 주무관〉

- 그 이후에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무혐의처분 내려진 것인가요? 검찰에서?

〈000 주무관〉

- 무혐의처분 나왔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경찰 형사고소나 그것은 무혐의로 종결이 된 것 같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감사를 불실시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고 마지막 남은 것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인 것이지요?

〈000 주무관〉

○ 맞습니다.

〈000 위원〉

○ 감사 결과 내용 요약된 것을 보니까 청구인이 성실의무위반을 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REDACTED]  
[REDACTED]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요. 성실의무위반 사실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000 주무관〉

○ 성실의무위반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자치사무 해당되는 사안에 있어서 자치사무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가 가능한데 법제처에서 해석하기를 법령 위반 사안에 성실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성실의무는 위반하였으나 감사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안내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안내 받은 다음에 청구인한테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징계처분이나 이런 것을 내리거나 한 사실은 있나요?

〈000 주무관〉

○ 구청에서는 감사결과를 7월 22일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8월경에 재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자로 재심의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요. 재심의 결과는 기각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기각이라는 것은 성실의무위반이 아니라는 건가요

〈000 주무관〉

- 그렇지는 않고요. 재심의는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으니 감사결과에는 부당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청구인을 조사하잖아요. 조사하고 문답서 같은 것도 작성하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런 그 서류가 작성이 된 적이 있나요?

〈000 주무관〉

- 문답서를 작성을 하면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만 가지고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청구인을 비롯한 그 담당자들한테 실제로 이러한 징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문답서 받은 내용은 결국 공익신고 관련된 조사하고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000 주무관〉



그런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 의견이었고요. 그게 재심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수사상의 처분과 별개로 부적절한 행정처분, 행정절차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공익신고자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신다는 의견이신 거예요?

〈000 주무관〉

- 맞습니다. 형법의 문제가 아니고.

〈000 위원〉

- 그러면 범죄에 대한 수사과 별개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받으면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00 주무관〉

- 감사에 대한 부분은 종결이 됐고요. 이 감사 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그 감사절차가 공개될 때는 그 내용들이 다 같이 공개가 되겠네요?

〈000 주무관〉

-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데 기본적으로 비공개 사항은 제외하고 원본 그대로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공익신고자로서 이 분이 공익신고한 내용이 다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끝나고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최소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000 주무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는 누가 공익제보를 했는지에 대한 비밀은 계속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보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사실이 있었는지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낸 사실을 근거로 처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처분서에서 이분들이 한 진술이라든가 행정 관련 공문 그런 서류들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000 위원〉

- 이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는 감사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공익신고자로서 쪽 보호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000 주무관〉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제보 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보 건들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의미를 떠나서 공익제보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000 위원〉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따라 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정서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이런 식으로 부서 의견을 마지막 정리하셨는데 어

췌든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공개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이런 식의 부서 의견 정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00 주무관〉

○ 알겠습니다. 향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주무관님 잠시 대기해주시고 의결 내용을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이 사건은 진정인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9조1항1호에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다른 법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1항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법률이 의미하는 바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판례가 국가정보원법 상에 조직이나 직원 정보 같은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법률상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국회법상에 비공개 회의록 같은 것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다른 법률 해당된다 이렇게 본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제정된 지가 상대적으로 최근인 법이라서 이와 관련된 판례는 찾

아봤는데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문언의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1항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공개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진정서가 9조1항1호에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봐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저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저도 공익신고 수사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돼서 비공개 의견인데 주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령에 따라서 비공개되는 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네요.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분청에서는 지금 1호에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거든요. 관련 법조항에서 5호나 6호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분청에서 1호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5호하고 6호를 더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처분사유에 추가변경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1항의6호다목의 사항

을 들어서 이것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5호나 6호 이것도 해당된다고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6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호가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피해자 신분조사 같은 내용을 봤을 때 개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내용들도 6호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본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서 같은 경우도 진정인의 신원 사항 부분도 6호의 개인식별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내용 같은 경우도 6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6호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청구인이 생각을 해서 1항6호다목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6호다목에서 이것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개했을 때 얻는 이익과 비공개했을 때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을 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크냐, 공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면 공개하는 것이고 비공개 이익이 크다면 비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비춰서 보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 사생활 비밀보호 같은 이익이 청구인의 개인 권리구제를 위한 이익보다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비위사실 같은 것을 조사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진정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이 사안은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사안에 해당 돼서 1항6호에도 해당 될 수 있어서 비공개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할 때 처분사유로 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덧붙이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기본적으로 진술하러 오신 소관부서 담당자와 5호와 6호를 적용하게 되려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회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5호와 6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감사 중인 사항이긴 하지만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했고 이분이 정말 공익신고자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5호, 6호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000 위원〉

- 저도 그런 부담 때문에 1호만 언급을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5호 6호가 조금 더 처분할 때 같이 부기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구인 자체가 6호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답답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이미 1호 사항으로 충분히 근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호를 통해서 비공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일단 공익신고자라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사항이고 그게 공익신고자 아니냐, 맞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일단 비공개로 결정하고 추후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이의신청이 온다면 그때 다시 5호와 6호를 다뤄야 한다면 그때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저는 5호, 6호가 같이 명시되는 것이 청구인을 설득하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6호 사유를 청구인이 언급을 하고 있어서요. 간단하게 그 부분만 같이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사유변경도 다수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000 위원〉

- 해당 청구인에 대해서 징계처분이 있게 되면 추후에 재판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건으로 끝날 것은 아니어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1호로 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다른 프로세스에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어찌되었든 보호를 한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명확하게 1호만 적용하고 끝내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결정 등이 나온다면 그때 또 다룬다면 쌍방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1호에 동의합니다.

〈000 위원〉

- 저도 1호로만 적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 의견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1호만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000 위원〉

- 청구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5호나 6호도 소수의견이나 별개 의견으로 있다고 주석을 달아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주무관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 재임장)

〈000 위원〉

-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유는 제1호 사유이고요. 소수의견으로 5호와 6호 사유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으니 그것도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1-7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